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통계 등 제도개선 방안

(경제정책수석실 산업정책비서관실, '05.3.31)

대통령님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통계제도 개선 및 우수 서비스 수출기업의 무역의 날 포상' 검토지시('05.3.9, 해양부 업무보고)에 따라 2차에 걸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거쳐 마련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계기관 회의(산업정책비서관 주재): 산자부, 해양부, 문광부, 한국은행, 선주협회, 무역협회

I. 검토 배경

- 해운 등 일부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못지않은 신장세 및 외화가득액 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통계체계 미비 등으로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
- 제조업 중심의 현행 수출통계제도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토록 개선, 해운업 등 서비스 수출을 잘한 기업도 무역의 날 행사시 포상토록 하여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육성기회로 활용(대통령 지시사항)
 - 우선, 서비스 산업의 수출비중이 큰 해운, 관광을 중심으로 검토

< 주요 부문별 서비스수출 동향 >

(억불)

부 문 별	′99	′00	′01	′02	′03	'04
서비스 수출	265.3	305.3	290.5	283.9	329.6	414.3
• 해 운	86.1	103.6	102.9	99.6	139.3	182.6
• 여 행	68.4	68.3	63.8	59.4	53.6	57.1
• 항 공	28.6	33.3	28.9	32.6	32.5	41.8
• 기타 서비스	82.2	100.1	94.9	92.4	105.2	132.8
서비스 수입	271.8	333.8	329.3	365.8	403.8	501.9
서비스 수지	6.5	-28.5	-38.8	-81.9	-74.2	-87.6

* 자료: 한국은행, 기타 서비스: 지적재산권, 통신, 보험, 건설, 컴퓨터 정보, 사업서비스 (중개무역, 법률/회계/경영 컨설팅, 운용리스, 광고) 등

Ⅱ. 서비스 무역통계 관리현황 및 문제점

- 1. 서비스 무역통계 관리현황
- □ 현재 서비스 수지는 한국은행에서 총괄적으로 파악, 관리
 - 상품무역은 관세청의 통관실적을 토대로 산출이 가능하나 서비스 무역은 별도의 통관절차가 없어 기본적으로 외환 수급통계에 의존
 - 외환수급통계는 외국환 은행이 한은에 보고한 외환수급 내역을 토대로, 매월 국제수지 발표시 서비스 수지를 함께 발표
 - ※ 산자부는 한은의 서비스 수지 기초자료를 토대로 관계부처, 관련협회의 무역동향 분석자료를 취합, 월별로 종합분석 자료 발표('05.3.1 첫 발표, 대통령 지시사항)
 - ※ 여행수지: 외환전산망 자료, 여신금융협회 자료(신용카드 사용실적)를 토대로 계상
 - 그러나 **운수 등** 외환수급통계로 정확히 파악이 곤란한 서비스 분야 의 경우, 해당 업계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표
 - 운수서비스(선주협회, 항공사) : 운임실적
 - 보험서비스(보험개발원, 금감원) : 보험료 수급실적
 - 통신서비스(통신사) : 수취 및 지급실적(총액)
 - ※ 운임, 보험서비스는 상품수출분(CIF 가격조건 수출시)에 포함된 경우가 많고, 통신서비스는 외환수급통계가 차액분만을 반영하므로 업계의 별도자료 필요
 -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조건: FOB 비용(물건값, 수출항까지의 물류 비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해상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

< 서비스 무역통계 산출방법 >

구 분	상품 수출	서비스 수출		
산출근거	통관실적 기준 (관세청, 무역협회)	외환수급통계 기준 (한은)	예외적으로 업종별 보고자료 (해운,항공,보험,통신)	

2. 문제점

- □ **현행 서비스 수지**는 운수, 여행 등 대분류 기준(28개 세항목)으로 발표되어 세부 업종별 실적 파악이 곤란하고 정책자료 활용에도 한계
 - 국제기준(OECD)에 맞추어 분류 항목을 세분화(70개 세항목)하고 세분화된 항목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필요

□ 업계로부터 받는 외환통계 자료의 정확성 확보문제

- 해운의 경우, 선주협회 작성 자료의 국제기준 불일치, 비회원사 자료 미포함 등으로 실제 규모보다 축소된 통계 발표 가능성
- ※ 주무부서인 해양부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업체의 각종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인 업종 전체통계 및 업체별 통계파악 곤란
- 관광의 경우, 업종별 협회가 취합 관리하고 있으나 업체보고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수집체계의 일관성 부족
- ※ 관광 업종별 외화 가득액은 한국관광호텔업협회(관광호텔), 한국일반여행업협 회(여행사), 문광부(카지노)가 집계

□ 개별 업체별 수출실적 파악 어려움

- 서비스 무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수출과 달리 **업종별 별도** 의 확인·인증 시스템 구축필요(업종의 특성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
 - ※ 상품의 경우 업체별 실적은 통관실적(무역협회 전산자료)으로 확인 가능
- 지식기반 서비스는 업체별 실적파악 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대외 무역법을 개정,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포함('04.1)
 - ※ 개관적인 업체별 실적확인 시스템은 서비스 무역 포함 및 포상의 전제조건 ※ 지식기반 서비스 : 경영상담, 법률서비스, 문화산업, 지적재산권 등
- 업체별 실적파악을 위해 한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소요 비용 및 은행의 업무 강제화 필요 등을 감안 시 실익이 없다는 입장(한은)
 - ※ 은행에서 업체자료를 거래 건별로 확인후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 구축필요

Ⅲ. 서비스 무역통계 개선방안

- □ 서비스 무역통계의 국제화 및 정확성 제고
 - 종합 서비스 수지 분류체계를 **OECD** 기준으로 세분화('05.12, 한은)
 - 현재 IMF 국제수지 분류체계를 OECD 등의 국제기구 권고안으로 세분화
 - ※ 현행 11개 항목, 28개 세항목 → 11개 항목, 70개 세항목 (첨부 참조)
 - ※ 현재 한은에서 작업 중이며, 동 세분화는 아시아 국가중 처음으로 시도
 - 세분화된 기준으로 매월 서비스 업종별 분석 자료도 공표('06, 산자부)
 - 해운 등 관련단체의 통계를 이용하여 서비스 수지를 산정하는 경우, 통계의 국제기준 일치 및 정확성 제고방안 검토
 - 해운의 경우 해양부가 한은 및 선주협회와 협의, 현행 해운서비스 통계 체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 강구('05.상반기)

□ 업체별 수출실적 확인시스템 구축

- 해운서비스의 수출실적 확인 시스템 구축
- 해양부가 선주협회, 한은 등과 공동으로 업체별 통계관리방안 협의 및 객관적인 실적 확인시스템 강구('05 상반기)
 - ※ 객관적인 통계확보 및 국제기준 합치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해양부)
- 업체의 관련 통계 보고의무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
- 관광의 경우 호텔, 일반여행업, 카지노등 주요 업종별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객관성 확보방안 및 업체별 수출실적 확인 시스템 강구
- 문광부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현행 업종별 통계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강구(필요시 용역추진)

IV. 무역의 날 포상문제 검토

□ 현행 수출업체 포상제도

-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수출실적을 토대로 무역의 날(11월 30일) 사업자 포상
- 수출실적 인정기간: 전년도 7.1~당해년도 6.30
 - ※ 개별 업체신청 → 무역협회 심사 → 산자부 결정
- 서비스 산업중 **지식기반 서비스의 경우는** 무역협회장 또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 협회장이 **인증한 실적을 토대로 포상**

□ 해운, 관광 서비스 산업의 무역의 날 포상문제

- **무역의 날 포상 가능**(산자부, 부처 요청시 관련규정 개정 가능입장)
- 다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의, 외화획득의 사실관계 파악 방법, 수출실적 확인·인증 시스템 등의 선행 필요(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사항)
- ※ 금년부터 부처별 포상인원(ceiling)을 일괄 배정하는 총량제(행자부, 정부포상지침) 시행으로 새로운 서비스 무역이 추가되는 경우 무역의 날 포상인원(금년 285개) 확대 필요
- 해운 및 관광의 경우, 무역의 날 참여 희망
- 업체별 실적확인 시스템 구축 후 관계규정에 서비스 무역의 근거 마련, 무역의 날 포상은 업계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 참여 추진
 - ※ 업체의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 구축이 관건
-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범위에 해운 및 관광서비스 반영시 업계의 외화획득에 따른 무역금융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포상 시기

- 대외무역법령 개정 이후부터의 실적만 포상근거에 반영되므로 금년의 무역의 날 포상은 곤란하며, '06년 무역의 날부터 포상 가능

V. 향후 추진계획

- □ 서비스 무역 통계시스템 개선
 - 서비스 수지 분류체계 세분화 : '05. 12(한국은행)
 - 업계의 서비스수지 산정방법 개선: '05. 상반기(해양부, 선주협회, 한은)
 - **업체별 수출실적 확인 시스템 구축** : '05.상반기(해양부, 용역추진)
 - ※ 관광의 경우, 업종별 **통계관리 개선방안 협의('05.상반기**, 문광부/한국관광협회/문화 관광정책연구원) 및 업체별 **수출실적확인 시스템 구축용역 추진('05. 하반기**)

□ 서비스 무역의 범위 확대

- 실적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해운을 우선적으로 추진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 '05. 6~7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 '05. 7
- **관광의 경우**는, 대외무역법령 개정의 선행조건 검토 후 **'05.하반기 추진**
- ※ 관광은 서비스 무역의 개념정립, 수출실적 확인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산자부 협의 후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정리(산자부, 문광부)

□ 무역의 날 포상

- 해운의 경우는 '06년 무역의 날부터 포상(관광, '07년부터)
- ※ 서비스 무역 추가에 따른 **무역의 날 포상 배정인원 확대 검토(행자부)**

<참부 : 서비스수지 분류체계 세분화(안) -예시>

현 행 (BPM5, IMF)	개 선(EBOPS, OECD)
1. 운수 1.1 여객운수 1.1.1 선박 1.1.2 항공 1.2 화물운수 1.2.1 선박 1.2.2 항공 1.3 기타운수 1.3.1 항만경비 1.3.2 운항경비 1.3.3 기타	1. 운수 1.1 해상운수 1.1.1 여객 1.1.2 화물 1.1.3 기타 1.2 항공운수 1.2.1 여객 1.2.2 화물 1.2.3 기타 1.3 기타운수 1.3.1 여객 1.3.2 화물 1.3.3 기타
2. 여행 2.1 일반여행 2.2 유학연수	2. 여행2.1 업무여행2.1.1 계절 및 국경 노동자의 지출2.1.2 기타2.2 업무외 여행2.2.1 건강관련 지출2.2.2 교육관련 지출2.2.3 기타
3. 통신서비스	3. 통신서비스 3.1 우편 및 상업송달서비스 3.2 원격통신서비스
4. 건설서비스	4. 건설서비스 4.1 해외건설 4.2 통계작성국에서의 건설
5. 보험서비스	5. 보험서비스 5.1 생명보험 및 연기금 5.2 적하보험 5.3 기타 직접보험 5.4 재보험 5.5 보험보조서비스
7.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7.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7.1 컴퓨터서비스 7.2 정보서비스 7.2.1 뉴스 제공 서비스 7.2.2 기타 정보제공 서비스
8. 특허권등 사용료	8. 특허권등 사용료 8.1 독점 판매권 및 유사한 권리 8.2 기타 특허권등 사용료
10. 개인, 문화 및 오락 서비스 10.1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10.2 기타	10. 개인, 문화 및 오락 서비스 10.1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10.2 기타 10.2.1 교육서비스 10.2.2 보건서비스 10.2.3 기타